

장애 학생 교육 시설을 위한 기금 조달 방안

이만우 |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김혜련 | 서울여대 사회사업학과 교수

I. 머리말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회원국이기도 한 우리 나라의 장애인 복지 시설 수준은 미흡하기 짹이 없다. 특히 각 학교의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 시설은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일부 대학에서 장애인 학생의 입학을 열어 놓고 있기는 하지만 교육 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가르치는 사람의 입 모습을 보고 말뜻을 알아내야 하는 청각 장애 학생이 수백 명의 학생이 모인 대형 강의실 가운데 앉아 있는 모습은 안쓰럽기 짹이 없다. 지체 부자유 학생이 10분이라는 짧은 휴식 시간 동안 멀리 떨어진 강의실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장애인에 대한 입학 전형은 정원 외로 모집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 시설이 미비한 대학들은 장애인 입학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수교육진흥법 제 13조 제 1항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 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대학측은 장애 학생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입학 포기를 권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편입학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입학 원서 접수를 거부하여 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해당 대학에서 학생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 대학의 이와 같은 태도는 단순한 편견에 의한 차별이라기보다는 시설 및 교육 방법의 불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학측도 시설이나 교육 방법에 문제가 없다면 굳이 장애 학생의 입학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장애 학생이 그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그 학생을 위해 건물을 개조하고 강의 시간표를 별도로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 학생에 대한 사전 면접을 실시하고 ‘학교에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하고 일괄적으로 서명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수교육진흥법 제 13조 제 2항에는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 교육 대상자의 입학 전형 및 수학 등에 있어서 특수 교육 대상자의 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는 사례는 드문 형편이다.

한편, 특수교육진흥법 제 28조의 2항에서 “특수 교육 대상자에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 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각급 학교의 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적 규정이 2000년 1월 28일자로 신설되었다.

장애 학생을 대학에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대학이 편의 시설을 갖추지 않아서 장애 학생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논리도 이제는 더 이상 통용될 수 없으며. 대학들이 서둘러 대안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장애인 교육에 대한 현행 입법 테두리는 입학을 제한하는 학교에 대해 처벌하는 채찍 형태로 되어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벌칙 조항을 빠져나가는 수준에서 은밀한 차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채찍보다는 장애 학생 시설 우수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충하는 당근 방식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이 논문은 대학의 장애 학생 시설 확충을 위해 재정 확보 방안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다.

머리말에 이어 제 2장에서는 장애 학생 교육 시설의 현황과 제 3장에서는 편의 증진법의 실효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 4장에서는 시설 확충을 위한 기금 조달 방안을 제시한 다음 제 5장에서 결론을 맺기로 한다.

Ⅱ. 장애 학생 교육 시설 현황

장애 학생 교육 시설은 대학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현재 100명 이상의 장애 학생이 재학 중인 강남대학교의 경우는 장애 학생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자폐증 학생에게도 입학이 허가되었다. 대학 내에 장애 학생과 자원 봉사자로 구성되는 소모임 형식의 자원 봉사 관리 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전공 교재 및 교양 도서가 점역 도서 형태로 충분히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경사로를 몇 년 전에 설치하였으나 혼자서는 올라갈 수 없을 만큼 가파르다. 아직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강남대학교의 경우 장애 학생에게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학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각장애인대학생연합회(2000)에서는 대학들이 시각 장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거의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예컨대 도서관 출입이 불편한 것은 물론이고, 시각 장애인을 위한 학습 기자재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컴퓨터 음성 학습기나 점자 프린터, 확대 독서기 등 필요한 시설들이 구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여건을 갖추는 대학에 가산점을 주는 평가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물리적인 편의 시설 이외에도 학습을 도와 주는 체계적인 학습 도우미 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

장애인 특례 입학을 시행하고 있는 전국의 18개 대학을 대상으로 교내 편의 시설 실태를 조사한 결과 특례 입학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 중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 지도와 점형 유도 블록, 장애인의 등·하교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장치, 장애인과 자원 봉사자를 연결해 주는 정보 통신망을 갖춘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시각 장애인은 점자 도서 구입과 점형 유도 블록이 없어서 교내에서의 이동이 어렵고, 언어 청각 장애인은 수화 통역사 등의 부재로 인해 강의를 이해하기 힘들테다 의사 소통 장애로 인해 학사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체 장애인은 계단이나 식당 등을 이용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실 출입문의 경우 휠체어의 폭은 80~85cm로 모든 시설물의 통과 유효 폭이 90cm 이상이어야 함에도 장로회신학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이 유효 폭이 90cm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휠체어 장애인의 출입이 불가능한 설정이다.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도서관도 장애 학생들의 출입을 막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휠체어 장애인이 도서관

“

장애인 대학 특례 입학 제도는

1995년도 신입생부터 처음 적용되어

그 해에 약 120여 명의 장애인이 대학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준비되지 않아

장애인들은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로 박탈당하고 있다.

”

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찰구의 유효 폭이 90cm 이상이어야 하고, 도서 목록 카드는 바닥에서부터 80~85cm 사이에 위치해야 하며, 서가 사이는 적어도 120c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지키는 대학은 한 곳도 없었다.

특히 접근권을 막고 있는 시설 중에서 화장실은 가장 절실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고려대 서창 캠퍼스와 서강대 등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마다 학생들이 타고 온 자가용으로 인해 대학 캠퍼스가 주차장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전체 주차장의 1% 이상 설치되어야 하고, 주요 출입구 또는 경사로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규정을 지키는 대학도 극히 드문 실정이다. 장로회신학대학과 제주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 내에 장애인용 공중 전화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대학 특례 입학 제도는 1995년도 신입생부터 처음 적용되어 그 해에 약 120여 명의 장애인이 대학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준비되지 않은 채 특례 입학 제도를 도입함으로 장애인들은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장애인복지신문, 1996). 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시공업체가 편의 시설 규정을 전혀 몰라서 잘못 설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장애 학생들의 피드백(여준민, 2000:32-34)이 있어서

사회 전반적인 인식과 그를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Ⅲ. 편의 증진법의 실효성

대학에서의 장애 학생의 편의 시설에 대한 각종 규정은 1998년 4월부터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 증진법으로 줄여 부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편의 증진법 제 2조 제 2항에서 “편의 시설”이라 함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편의 시설을 설치해야 할 대상으로는 도로, 공원, 공공 건물 및 공중 이용 시설, 공동 주택, 교통 수단, 통신 시설, 기타 장애인 등의 편의 시설이 설치가 필요한 건물 및 그 부대 시설로 보았다. 편의 시설의 대상에서 교육 시설이 의무 대상이라고 이해하기에는 막연하게 규정되어 있다. 또한 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신규 건물에만 해당이 되어 기존 시설물에 대한 강제력은 없다.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등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편의 시설은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일차적인 관문이다. 장애 학생들이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편의 시설뿐만이 아니라 학교 생활을 지원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여타의 사회 복지법과 마찬가지로 편의 증진법 또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기보다는 시설주에 대한 처벌에 관한 규정이 매우 구체적이다. 시설주로 하여금 편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편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사회 복지법의 특성상 수혜자인 장애인 측의 권리 주장이 미약한 우리 나라로서는 법률의 실효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 편의 증진에 있어서 편의 시설을 지원할 기금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민간의 편의 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편의 증진법 제 1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조세 감면에 대하여는 법인 및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금액에 대하여 조세 특례 제한법, 지방 세법 등 조세 관계 법령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장애 학생에 대한 배려는 정부나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대외적인 기금 조성보다는 일부 뜻 있는 개인이 사제를 기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제는 정부와 민간 부문이 폭넓게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IV. 기금 조달 방안

대학의 장애 학생 기금 조달은 크게 정부 예산으로 조달하는 방법과 민간 부문에서 조달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를 지닌다. 특히 자활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지원을 배분해야 할 것이다. 정부 예산으로 조달하는 방법은 장애 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대학에서 교육부에 예산을 신청하는 방안이 있다. 대학이 일부 자체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교육부의 담당 부서는 고등 교육 지원국이며, 교육부 예산은 기획 예산 담당관이 총괄하게 되어 있다. 교육부가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신청하면 기획예산처 예산 실장 산하의 사회예산 심의관의 지휘를 받아 교육문화예산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편성된 예산은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지금까지 대학이 장애 학생 시설에 대한 예산을 신청한 사례는 거의 없으며, 교육부가 스스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도 않다. 국민의 정부가 복지 정책을 중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 학생 교육 시설에 대한 예산은 교육부의 의지에 따라 확보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교육부가 대학의 예산 신청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실태 파악을 해서 예산 신청을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한다. 교육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 학생 시설 확충에 나서기 위해서는 장애 학생 시설 우수 대학에 대한 지원 예산을 미리 확보하고 대학에서 시설 확충 계획을 접수하여 심사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00년 정기 국회에 제출하는 세제 개편안에는 일부 교육세의 적용 시한이 5년 연장되고 세율도 인상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2001년부터 교육세는 매년 1조 6천 억 원씩 증액되도록 되어 있다.

교육세가 목적세에 해당되고 다른 세목에 부가하여 징수되는 방식으로 징수되어 조세 전문가들 사이에는 폐지론이 확산되고 있다. 결국 교육세의 존폐는 이의 사용에 있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얼마나 확보하

“

장애인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자랑의 길을 열어 주는 것으로

추후 국고에서 지원될

장애인 생활 보호 예산의 절약으로도 연결되는 것이다.

”

는가에 달려 있다. 장애 학생 교육 시설 확충에 교육 세를 사용한다면 국민들 사이에 교육 예산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보다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이며, 교육세의 사용 목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주도적인 노력과 함께 민간 부문의 지원도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민간 부문의 지원은 개인 독지가로부터의 기부금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익 중에서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의 기부금 및 각종 공익 법인의 사업비 중에서 사용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현행 세법상 개인이 대학 시설비에 기부할 경우에는 국립 대학의 경우는 전액, 사립 대학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근로 소득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소득 공제를 적용한다. 정부는 소득 세법을 개정하여 사립 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전액 소득 공제를 인정하도록 할 방침으로 있다.

개인의 대학에 대한 기부금의 세금 혜택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예를 들어 개인 소득 세율이 44%(소득 세 40%와 소득할 주민세 4%를 합한 세율임)에 해당되는 사람이 대학에 1억 원을 기부할 경우 4천 4백 만 원의 소득세가 공제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부자 개인 부담분 5천 6백만 원과 정부의 세제 혜택 금액 4천 4백만 원을 합하여 1억 원의 기부금으로 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학측에서 장애 학생 교육 시설의 필요성과 세제 혜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상당수의 독지가로부터 기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법인 형태의 기업이 대학에 기부금을 제공할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받아 기부 금액의 30.8%(법인세 28%로 소득할 주민세 2.8%를 합한 세율임)의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특히 개인 대주주가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개인 대주주의 배당 소득세의 절약 금액까지 고려하면 상당한 세금 혜택이 부여된다. 법인 기업의 경우 장애인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그 기업에 대한 호감을 형성하여 결국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공익 법인의 경우에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대부분의 공익 법인의 경우 대학의 장애 학생 시설 기부금은 목적 사업비에 해당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익 법인의 수익 중 일부분을 장애 학생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재벌 기업은 수 개의 공익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 또한 시민 단체에서 공익 법인의 장애 학생 시설 지원 실적을 홍보함으로써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등의 정부 부처가 협력하여 자기 부처에 지휘 감독을 받는 공익 법인들이 사업 지원금 중 일부를 대학의 장애 학생 시설 확충에 사용하도록 유도한다면 어렵지 않게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 학생 시설에 대한 재원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서 대학들이 백서를 발간하여 지원 예산의 수

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공시함으로써 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유발할 필요가 있다.

라 언론사 등 대학 평가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 부문에서도 장애 학생 교육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하여 평가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

V. 맺음말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다. 이를 위해 국가와 국민 모두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에게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자활의 길을 열어 주는 것으로 추후 국고에서 지원될 장애인 생활 보호 예산의 절약으로도 연결되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대학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대학들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대학에 지원하는 단계에서 장애인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입학이 허가된 이후 장애 상태에 따른 교육 편의 시설을 대학이 책임지고 마련하되 국가가 예산으로 일부를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대학의 장애 학생 시설의 수준을 평가하여 공시함으로써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 차등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시설 확충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대학 평가에서 장애 학생에 대한 시설 수준이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 등의 정부 기구뿐만 아니

〈참고 문헌〉

여준민(2000). 장애 대학생의 실질적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대학의 역할. 28~35.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복지신문. 1996년 1월 5일자. 대학내 편의 시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 대학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 및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고려대 경영대 교수로 재직중이며, 정부 투자 기관 운영위원, 재정경제부 세제 발전 심의 위원, 한국담배인삼 비상임 이사 등의 위촉직을 맡고 있다.

김혜련

서울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에서 사회학 석사, 미국 워싱턴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석사, 서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여대 인간개발학부 사회사업학 조교수로 재직중이며, 양천사회복지법인 이사 등의 위촉직을 맡고 있다.